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213
- 제안자 : 김재형 의원 외 10명(찬성자)
- 제안일 : 2021년 2월 5일
- 회부일 : 2021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로써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23조 공가사유 중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를 신설함(안 제23조제12호).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검사시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23조제13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2021. 2. 16. ~ 2. 23)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검사시 ‘공가’ 또는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규정(「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2020.12)을 ‘공가’ 처리 근거로 명문화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11. (현행과 같음) |
| <신설> |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 <신설> |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검사시 |

-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누락한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코로나 19 검사에 따른 공가관련 지침(「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기관 별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공무원과 협의하여 재택근무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출근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이 중 안 제23조제12호는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공가를 처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속초수련원 등 서울시 공무원이 원격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원격지(서울 외) 근무 현황](’21.4월 기준)

| 기 관 명 | 소 재 지 | 근무인원(명) | 비 고 (도보·버스연계) |
|-----------|------------------------|---------|------------------------|
| 보건환경연구원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295 |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
| 서울대공원 | 경기도 관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185 | 4호선 대공원역 |
| 공무원수련원 |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 12 | |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 48 | 5호선 올림픽공원역· 둔촌동역 |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 81 | 경의중앙선 양정역·덕소역 |
| 난지물재생센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 112 |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

※ 서울시 본청·사업소 전체인원 : 10,591명

-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019.4.16)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23조제13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검사시 공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바, 코로나19 검사 등 전염성이 강한 검사에 따른 ‘재택근무’ 또는 ‘공가’ 규정(「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의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고, 코로나 19 검사 이후 현실성 있는 조치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현실적으로 코로나 19 접촉자나 의심증상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후 사무실에 복귀 등을 할 수 없고, 이동 및 검사 후 귀가 할 경우에 재택근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바, 이를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시 사전투표 및 선거 당일 공가 처리 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7조의6제3호와 같이 공가 처리에 대한 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안 제23조제13호는 코로나 19 감염병 검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행정국에서는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공가 규정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어 안 제23조제13호 신설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 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포괄주의(Negative System)와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법적 규제를 지정하는 방식 혹은 법적 규제에 대한 입장으로서 포괄주의는 규제 대상만 열거해서 규제 대상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이고, 열거주의는 허용 대상만 열거해서 허용 대상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적 적용 방법으로 사용하기는 하나,

- 코로나 19 감염병 검사 등에 따른 공가 규정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각종 감염병 검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바, 공가사유를 예시적인 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공가사유와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행정자치부, '06.5)」에서는 법령 규정을 통해 실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규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당 규정은 예시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하고 있음.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행정자치부, '06.5.) p.104 주요 내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규정된 공가사유는 예시적인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되, 예시된 공가사유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운영해야 할 것

○ 한편,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인 바, 공가 사유에 대한 직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